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607
-----------	-----

2019년 4월 22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2019년 3월 1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3월 27일 수도권교통본부의 기존 업무를 위원회로 이관 후 본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산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 해산을 위하여 시의회의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의결을 구함.

나. 주요골자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을 폐지하고, 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는 주무관청이 포괄 승계하도록 하고, 조합의 소관 사무는 주무관청이 승계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3조)
- 종전의 규약에 따른 조합회의 위원은 조합해산 청산인을 선임한 날로부터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의 사무이관 및 조합해산을 추진하도록 현행 수도권 교통조합규약 폐지, 조합 권리 및 사무에 대한 주무관청 승계, 조합회의 위원 경과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참고 :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후략 -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 제1항을 준용한다.

나.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를¹⁾ 설립하여²⁾ 운영하였으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간 논의를 통해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1) 설립당시의 명칭은 “수도권교통조합”이었으나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약변경을 통해 2007년 9월 “수도권교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2) 3개 시도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2005년 2월 수도권교통조합이 설립됨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라고 한다.)설립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2019년 3월 19일 대광위가 출범하였음³⁾

- 대광위는 정무직 위원장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합의기구와 수도권을 포함한 5개 대도시권 권역별 위원회, 2개국 7개과로 구성된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담당할 예정임⁴⁾

※ 참고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조직도



- 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 업무를 중점으로 각 권역별 BRT, 환승센터 도입 등 그간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③ (생략)
 4) 국토부 보도자료(2019.3.19.),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3.19일 공식 출범”

행하게 될 것임

- 본 동의안은 대광위 출범에 따라 기존 “수도권교통본부”와의 업무 중복이 불가피하여 업무이관 및 조합해산이 추진되고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사항⁵⁾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교통본부 해산을 위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본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의결이후 경기도, 인천시 지방의회의 조합규약 폐지가 의결⁶⁾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 할 때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에 시행될 것이고,

따라서, 부칙 제3조에 따른 사무이관이 해당 주무관청에서 업무를 승계 받아 대광위에 각각 이관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교통본부(해산추진단)가 각 지자체를 대행하여 대광위로 사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이외에 해산의 경우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⁷⁾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⁸⁾에서 의결된 “조합해산 결의안” 및 “청산인 선임안”을 제외

5)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 / 2019.4.19.의결

6)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해산 기본계획(2019.3) / 인천시, 경기도(의회일정에 따라 5월중 의결예정)

7) 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8)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해산 기본계획(2019.3) / 2019.4.19. 의결

1.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해산결의안 2. 수도권교통본부 청산인 선임안
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

하고 “조합규약 및 관계규정 폐지안”에 대해서만 서울시의회로부터
동의안을 의결코자하는 것이 향후 조합해산 의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

의안 번호	607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2019년 3월 1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3월 27일 수도권교통본부의 기존 업무를 위원회로 이관 후 본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산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음.
- 나.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제1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 해산을 위하여 시의회의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의결을 구함.

2. 주요내용

- 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을 폐지하고, 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는 주무관청이 포괄 승계하도록 하고, 조합의 소관 사무는 주무관청이 승계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3조)
- 나. 종전의 규약에 따른 조합회의 위원은 조합해산 청산인을 선임한 날로부터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김정훈 (☎ 2213-2222)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을 폐지한다.

부 칙(2019. 4. .)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는 해당 주무관청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공부에 표시된 조합 명의를 이를 주무관청의 명의로 본다.

제3조(사무이관)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조합의 소관 사무는 주무관청이 이를 승계하고, 승계되는 사무의 처리는 주무관청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조합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조합회의 위원은 조합해산 청산인이 선임된 날부터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정 2005. 2. 4. 제1호
개정 2007. 9. 7. 제2호
개정 2009. 10. 22. 제3호
개정 2012. 9. 17. 제4호
개정 2016. 2. 2. 제5호
개정 2018. 1. 10.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대중교통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 수도권교통본부(이하 "조합"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및 의무)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협조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2.2.>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무
3.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계하는 도로·철도계획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무
4. 수도권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
5.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관한 사무
6.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무
7. 수도권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2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7인, 인천광역시 5인, 경기도 7인, 국토교통부 3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22., 2016.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9.10.22., 2016.2.2.>

1. 조합원의 교통업무 담당 국장 각 1인
2. 조합원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 3인
3.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서울특별시 3인, 인천광역시 1인, 경기도 3인
4.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 담당 국장 1인
5.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2인

④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자격을 가진 때까지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보궐선출 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7.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한다.
-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사항이 제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개 또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조합장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9.7.>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4조(경비분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조합의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이 조합회의의 구성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분담한다.<개정 2007.9.7.>

③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1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합원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5장 해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개정 2007.9.7.>

제19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2005. 2. 4.>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7.>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22.>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17.>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0.>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의 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